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I 제안경위

1. 서영진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출 자 : 서영진 의원 외 14명

나. 의안번호 : 제476호

다. 제출일자 : 2015. 4. 15.

라. 회부일자 : 2015. 4. 15.

2. 김태수 의원 발의안

가. 제 출 자 : 김태수 의원 외 10명

나. 의안번호 : 제565호

다. 제출일자 : 2015. 6. 17.

라. 회부일자 : 2015. 6. 18.

II. 제안사유

1. 서영진 의원 대표발의안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14.1.28)으로 택

시공영차고지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공영차고지의 범위에 택시공영차고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김태수 의원 발의안

- 서울시는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에 등록을 한 자에 대해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14.1.28)으로 택시 공영차고지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서울시 공영차고지 사용이 추진되고 있는 바,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서울시 공영차고지 사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사업자간 형평성을 담보코자 함

III. 주요내용

1. 서영진 의원 대표발의안

- 가. '공영차고지' 정의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버스 등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고지를 말한다)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
- 나.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추가함(안 제4조제1항)
- 다. 기타 상위 법령에 맞게 내용을 수정함(안 제4조제3항, 제7조제

1호, 제11조제2항)

2. 김태수 의원 발의안

- 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추가함
(안 제4조제1항)

IV. 참고사항

1. 서영진 의원 대표발의안

- 가. 관계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5. 4.17 ~ 2015. 4.24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원안 수용

2. 김태수 의원 발의안

가.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5. 6.18 ~ 2015. 6.25

- 제출의견 : 찬성의견 101건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원안 수용

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1. 서영진 의원 대표발의안

- 동 개정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¹⁾으로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및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택시에 대해서도 공영차고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참고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택시공영차고지"란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車庫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제7조(재정 지원)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도에 지원할 수 있다.

1. 시·도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한 자금
2.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영차고지에 대한 사용 허가나 제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서울시는 공영차고지 수용 용량이 충분치 않아²⁾ 동 조례로 시내버스·마을버스·특수여객자동차(장의차량) 운송사업자와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 교통안전공단 내압용기 검사시설 등에 대해서만 공영차고지 사용을 허가하고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택시에 대한 공영차고지 사용이 허가될 경우 기존 공영차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시내버스 및 마

1) 2014.1.28. 제정 / 2015.2.29. 시행

2) 서울시 공영차고지 현황 : 총 33개소(건설 11개소, 매입 22개소), 총 면적 458,898㎡, 박차대수 4,020대(※전체 인가·등록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44% 수용)

을버스 운송업계의 불만과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며, 서울시버스 운송사업조합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시내버스의 공영차고지 입주 어려움, 택시 허가시 공영차고지내 안전사고 증가 우려, 버스 와 택시 노노간 갈등 우려 등의 이유로 '원안 반대' 의견³⁾을 제출 하였음

- 다만, 관련 법령상 공영차고지내 사용 제한이 없는 점, 그간 택시는 공영차고지 사용에 제한을 받아온 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관한 법률」로 국가가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재정지 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택시의 공영차고지 사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동 조례 개정을 통해 택시의 공영차고지 사용 근거가 마련될 수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공영차고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공영차고지 입주로 연결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서 동 조례 개정 실익을 위해서는 추가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방 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

- 한편, 서울시장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수용' 의견⁴⁾을 제출 하였음

3)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버조기 제399호(2015.4.27.)

4) 주차계획과-8274(2015.6.23.)

2. 김태수 의원 발의안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시내버스·마을버스·특수여객자동차(장의차량) 운송사업자에 대해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택시에 대한 공영차고지 사용이 추진되고 있는 바,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공영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사업자 간 형평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 전세버스 공영차고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었고, 전세버스 업계에서는 그 간 공영차고지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음

※ 참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3.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해당 시·군·구 관할 구역 내 개발제한구역 밖에 입지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로서 이미 훼손된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서.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부대시설은 사무실 및 영업소, 차고설비, 차고부대 시설, 충전소,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휴게실 및 대기실만 해당한다. 다)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 공영차고지 수용 용량이 충분치 않아⁶⁾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관련 법령상 공영차고지내 사용 제한이 없는 점, 운송사업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전세버스 공영차고지를 별도로 조성하거나, 버스의 공영차고지 이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신설 공영차고지 일부에 대해 전세버스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한편, 서울시장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수용’ 의견⁷⁾을 제출하였음

6) 서울시 공영차고지 현황 : 총 33개소(건설 11개소, 매입 22개소), 총 면적 458,898㎡, 주차대수 4,020대(※전체 인가·등록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44% 수용)

7) 주차계획과-8274(2015.6.23.)